



2015 폭력 예방 교육 지원 계획

관내 아동·여성을 대상으로 4대 폭력인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지원하여 폭력의 심각성 및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여 아동·여성이 안전한 중구를 조성하고자 함.

I 추진 근거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0조
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서울특별시 중구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II 추진 방향

- 장애 아동·여성, 폭력 피해 여성 등 취약계층 우선 교육 대상 선정 지원
- 교육 대상별 상황 및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진행
- 폭력의 개념, 간단한 예방 수칙 습득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

※ 2014년 추진 실적 : 총 9개 기관, 22회 265명 실시

III 세부 추진 계획

- 기 간 : 2015. 9월 ~ 11월
- 교육대상 : 관내 아동 및 여성
- 실시기관 : 관내 가정폭력상담소, 지역아동센터, 장애인 시설, 사회복지관 등

■ 교육내용 :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

-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의 개념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
- 폭력 피해 발생 시 지원 절차 및 구제 방법 안내

■ 추진방법

- 교육 실시 희망기관 수요조사 후 시설별 강좌 배정
- 강사 선정 : 교육 실시기관에서 해당 분야 전문강사 자체 선정
※ 서울시 여성가족재단,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된 전문강사 활용
- 교육 실시
 - 교육 실시 기관은 교육 실시 후 3일 이내 강의확인서, 교육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(※ 증빙 자료 미비시 강사료 미지급, 기관 자부담 처리)
 - 성인지 관련 교육 포함 실시 기관의 경우 우선 선정
- 강사료 지급
 - 실시기관으로부터 결과 보고서 등 확인 후 여성가족과에서 강사 계좌로 강사료 직접 입금
 - 강사료 지급 기준 : 1시간 100,000원 (※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준함)

IV 소 요 예 산

■ 소요예산 : 2,00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

- 산출내역 : 100,000원 × 20회 = 2,000,000원
- 예산과목 : 여성가족과, 보육·가족및여성복지증진, 여성의 복지향상,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, 일반운영비, 행사운영비

붙임 : 1. 수요조사 대상 시설 1부.

2. 교육 신청서, 강의확인서, 결과 보고서 각 1부.